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2. 3. 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직) ①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소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- ③ 센터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.
- 제3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 - 1.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관련 지원
 - 2. 서울테크노폴리스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전문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
 - 3. 서울테크노파크 NIT융복합전문인력교육과정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운영위원회 설치) 센터에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제5조(기능)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

한다.

- 1.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방향 및 운영
- 2.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테크노파크 간 협력에 관한 사항
- 3.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
- 4.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
- 5. 그 밖에 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.
- 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된다.
 - ③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사무국장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· 의결한다.
- 제10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센터

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(제56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